

문서번호	문화체육과-27965
결재일자	2015.10.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문화관광담당	문화체육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설재홍	이명근	장순봉	10/06 도일환		
협 조					

## 2015년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

2015. 10.

**교육문화복지국**

**[문화체육과]**

# 「2015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」 교육

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자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,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 I

### 관련 근거

-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9조 (유통질서의 확립)
- 『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11조 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

## II

### 추진 목표

- 사행성 게임, 불법 PC방 등 법 위반사항 사전 근절
-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환경조성
- 음악 및 게임산업의 발전 도모

## III

### 추진 방향

- “인터넷PC문화협회”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
-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내실 있는 교육실시
- 업소운영 관련 각종 정보제공으로 종사자 수준향상
- 준법정신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
- 불참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

## IV

## 교육 개요

### ■ 공통교육

- 일 시 : 2015. 10. 14(수) 15:05 ~ 16:15
- 장 소 : 다목적홀 (지하1층)
- 교육대상 : 341명 (노래연습장 200명, 게임제공업 29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12명)
- 초빙강사 : 해당 분야 전문강사, 보건소, 성북소방서 등 관계 공무원
- 교육내용
  - 금연 관련 준수사항 교육 및 홍보
  - 다중이용업소 소방관계 법령 이해
  - 세무분야 및 업소운영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
  -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

### ■ 전문교육

#### 【게임제공업 ·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】

- 일 시 : 2015. 10. 14(수) 14:05 ~ 14:55
- 장 소 : 다목적홀 (지하1층)
- 교육대상 : 141명 (청소년 · 일반게임 22, 복합유통 7, PC방 112)
- 내 용 :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설명, 운영사례 소개 등
- 강 사 : [사]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소속 전문강사

#### 【노래연습장】

- 일 시 : 2015. 10. 14(수) 16:25 ~ 17:15
- 장 소 : 다목적홀 (지하1층)
- 교육대상 : 200명
- 내 용 :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설명, 위반단속 사례소개 등
- 강 사 :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협회장

**■ 교육방법 : 협약서 체결 후 교육 위탁**

-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제23조(권한의 위탁)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제16조(권한의 위탁)

**■ 교육진행순서**

시 간		소요시간 (분)	내 용	진 행	비 고
시작	까지				
13:40	14:00	20	등 록		교재수령 등
14:00	14:05	5	교육진행 안내	사회자	협회
14:05	14:55	50	PC 및 게임관련 교육	강사	협회
<b>14:55</b>	<b>15:05</b>	<b>10</b>	<b>인사말씀</b>	<b>구청장</b>	
15:05	15:35	30	소방 안전교육	강사	소방서
15:35	16:15	40	금연, 청소년지도, 대안교육 등 공통교육	강 사	건강정책과 세무서
16:15	16:25	10	휴 식		
16:25	17:15	60	노래연습장 교육	강 사	해당분야 전문강사
17:15	17:30	15	공지사항 및 질의응답	사회자	협회
17:30	-	-	교육종료		

**V 예산 현황**

**■ 소요예산 : 3,070천원**

- 홍보물, 현수막, 교재 등 : 1,620천원
- 강사료 등 인건비 : 1,100천원
- 소모품 등 기타잡비 : 350천원

**■ 예산과목 : 문화체육과,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,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, 여가산업종사자교육, 일반운영비**

**■ 지급방법 : 교육 종료 후 결산정산서에 의해 교육비 지급**

## VI

### 향후 추진계획

- 교육장소 사전신청
- 협약체결후 각 1부 보관 및 교육자료 상호 제공
- 교육 7일전 교육안내문 발송
- 보충교육은 1회에 한하여 10월중 실시
- 최종교육 불참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

붙임 교육위탁 협약서 각1부 끝.